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 시 절반 감액 지급〉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4805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 안 일 : 2025. 12. 3.
3. 회부연월일 :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을 통해 각 직역연금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현행법 제20조제2항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¹⁾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도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생략) ② 퇴직연금 또는 <u>조기퇴직연금</u> ,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u>조기퇴직연금</u> ,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u>조기퇴직연금</u> -----

1) 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서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을 의미함.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 을 빼고 지급한다. ③ ~ ⑦ (생 략)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 법 제20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은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직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중복급여를 조정하기 위한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

다른 직역 연금을 규정한 법들은 해당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2항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에서 모두 동일하게 다른 직역연금에서 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그런데 동법 제20조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는 퇴역유족연금 감액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별정우체국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는 퇴역유족연금 감액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참고자료, 다른 직역연금법상 유사 규정 참조.

□ 이에 개정안은 퇴역유족연금 감액지급 대상에 별정우체국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를 추가함으로써 중복지급될 수 있는 직역연금에 대한 조정을 통해 직역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현재 개정안에 따른 별정우체국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이면서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 수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대상자는 없으나, 향후 대상자 발생에 대비한 입법 미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다른 직연연금법상 유사 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②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① …(생략)…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생략)…제41조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⑥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